

고성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

(의안번호 제962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. 3. 20.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2006. 3. 20.
다. 상 정 의 결 일 자 : 2006. 3. 29. 총무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정이유

- 장수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여, 노인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로효친을 사회적 분위기로 조성하기 위하여 고성군 장수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수당 지급대상자는 매월 15일 현재를 기준, 고성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수노인(85세 이상인 자)으로 함. (안 제3조)
- 나. 1인당 월 지급액은 예산범위 내로 하고, 수당을 신청한 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함. (안 제4조)
- 다.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읍·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함. (안 제5조)
- 라. 수당은 수당지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신청자가 수당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.(안 제7조)
- 마. 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, 고성군 관할 구역 외로 전출, 주민등록 말소 등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,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때 수당 지급을 중지함.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노인복지법 제4조

나. 입법예고 : 고성군 공고 제2005-656호(2005. 12. 26. ~ 2006. 1. 15.)

⇒ 의견제출사항 없음.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경노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 장수수당 지급 관련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추진중에 있으며 지급대상은 시군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85세 이상으로 정하고 지급금액은 월 3만원 ~ 5만원 수준이며,
- 우리군에서는 지급대상을 85세 이상인자로하고 월 지급액은 예산범위내로 정하고 있어 타시군과 형평이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 보이며,
- 고령화 사회로 되어가는 추세에 맞추어 장수수당지급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, 재정부담은 가능한지 ?
- 실질적인 지원효과는 있는지 등을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6. 질의 및 답변

- 문 : 85세이상 장수노인수와 소요예산은?
- 답 : 85세이상 인구 590명 정도이며 연간 2억 3천만원정도 예산 요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.
- 문 : 수당 지급대상자가 신청토록 되어 있는데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에 대한 대책은?
- 답 : 매월 대상자 발췌하여 개별로 사전 신청 안내토록 하겠습니다.

7. 토 론 : 없음

8. 심사결과

- 2006. 3. 29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